

교역자 후생업무 세칙

본 시행세칙은 총회 회칙 제 9조 3항(후생위원회)의 교역자 후생업무를 위하여 총회 회칙 제 46조(세칙)에 근거하여 제정한다.

제1장 명칭과 목적

제1조 본 시행세칙은 C&MA 한인총회 교역자후생업무세칙(이하 “세칙”이라 함)이라 칭한다.

제2조 본 세칙은 본 총회 산하 교역자로, 정년 은퇴하거나 질병, 사고, 노쇠 등으로 직무 수행을 중단한 경우, 해당 교역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원호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회원 및 지급대상

제3조 본 총회 산하 교회, 기관 및 선교지에서 사역한 교역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 자.

- 1항 교회나 개인이 총회에서 지정한 연금제도에 가입한 자
- 2항 총회 상회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교회에서 시무하는 자, (교회 사역자가 아닐 경우, 총회의 제반 사역에 충실히 순종, 협조하는 자)
- 3항 총회 정기모임에 충실히 참여하는 자

제4조 본 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- 1항 본 총회 교회에서 재직 후 정년 퇴직한 자
- 2항 본 총회에서 재직 중 소천한 회원 교역자의 배우자
- 3항 본 총회 소속 교회 시무 중 질병, 부상, 노쇠 등으로 인해 휴직 혹은 퇴직하는 경우, 실행위원회와 후생복지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된다.

제3장 연금 급여액 및 지급 방법

제5조 연금 지급액은 납부액과 총회 지원금 외 금융 이익금이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- 1항 지급액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액,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.
- 2항 다음에 해당된 자는 총회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.
 1. 교단 교회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교회 및 교역자
 2. 교단을 탈퇴한 자
 3. 목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실행위원회가 판단하는 자
- 3항 연금 지급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실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지급된다.

제4장 재정

제6조 본 연금 재정은 다음과 같이 조달한다.

- 1항 각 교회는 교역자들의 연금 납부액을 정하여 총회가 개설한 403(b) 연금에 계좌를 개설하고 자동 인출되도록 한다. 또한 회원 개인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.
- 2항 총회는 각 교회가 납부하는 상회비 중에서 일정 금액을 해당 교회 담임 교역자를 위하여 지원한다.
- 3항 2항 총회 지원금액의 비율은 매년 실행위원회가 정한다.

제5장 관리

제7조 본 연금은 실행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을 엄선하여 관리를 위탁하고, 후생위원회가 수시 점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